

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[별표 3의2] <신설 2021. 5. 26.>

토사채취변경신고의 첨부서류(제24조의2제3항 관련)

변경사항	첨부서류
1.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	가. 변경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나. 토사채취량에 대하여 일반측량업자등이 측량한 구적도 1부
2.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	가.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·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, 사용·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·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) 1부 나.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. 이미 신고를 한 자의 명의변경동의서 1부 라.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
3. 법인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대표의 변경	없음
4.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의 변경	가.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·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(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, 사용·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·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) 나.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